

情報化委員會規則

[2004年 5月 28日 制定]

변경 2016. 6. 29. 의결

변경 2025. 6. 26. 의결

第1條 (目的) 이 規則은 會則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化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의 組織, 運營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)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. <개정 2025.6.26.>

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, 부위원장과 위원은 협회장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 <개정 2016.6.29., 2025.6.26.>

③ 委員會에 書記 1人을 두며, 協會長이 協會事務局 職員중에서 任命한다.

제3조 (위원의 임기 등) ①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委囑한 協會長의 任期와 같다.

② 委員長 또는 委員 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協會長은 지체없이 그 後任者를 委囑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신설 2016.6.29.>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6.6.29., 개정 2025.6.26.>

⑤ 위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과제에 관하여 연구, 조사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. <신설 2025.6.26.>

제4조 (위원회의 직무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.

1. 홈페이지의 관리, 운영
2. 회무의 전산화에 관련된 업무
3. 법무사업무에 관련된 전산교육 및 전산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
<개정 2016.6.29.>
4. 법무사업무의 전산화관련 법령, 제도의 연구
5.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의 연구, 조사 <신설 2016.6.29.>

② 협회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전항의 직무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사항의 연구,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5.6.26.>

제5조 (위원회의 운영) ① 委員會는 委員長과 委員으로 構成되는 會議의 會議體로 運營한다.

②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主宰한다.

③ 다음 사항은 委員會의 會議에서 결정한다.

1. 위원회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5.6.26.>
2.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<개정 2025.6.26.>
3. 위원별 과제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<신설 2025.6.26.>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및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 및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6.6.29.>

제6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,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6.29.>

② 소위원회 팀장과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, 위원이 아닌 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6.29.>

<본조제목개정 2016.6.29.>

제7조 (회의록 및 보고)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. <개정 2016.6.29.>
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개정 2016.6.29.>

<본조제목개정 2016.6.29.>

第8條 (手當) 委員長과 委員에게는 研究 檢討한 課題, 委員會의 會議參席回數 등에 따라 協會가 정하는 手當을 지급한다.

附 則 <제정 2004. 5. 28.>

第1條 (施行日)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.

부 칙 <변경 2016. 6. 29.>

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변경 2025. 6. 26.>

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